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319호

나. 제 안 자 : 이성배 의원 외 11명

다. 제안일자 : 2020년 2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 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같은 조제3항의 “시의 출연금” 을 “ 기금전출금” 으로 각각 변경함.

- 출 연 금 :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기금전출금 :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 전출하는 경비

나. 제명 등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인 서울시의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는 기금 수입항목으로의 변경을 통해 조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

- 서울시는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65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운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투자계정을 신설해 융자계정과 분리해 운용하고 있음.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의 운용 규모는 3,232억 8천 1백만원으로, 중소기업 직접 융자금(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2.0~2.5%)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1.0~2.5%) 등으로 지출됨¹⁾.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323,281	합 계	323,28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74,045	사업비	융자금	265,000
			이차보전금	46,020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시스템 유지보수비	99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729
예치금회수	76,036	기본경비		1,000
일반회계 전입금	70,200	재무활동	예치금	7,815
			예수금 이자	2,618

- 융자계정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2조 1,0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65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8,400억원)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 중에 있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 중 1조 6백억원의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특별 융자를 시행 중임.

<최근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합 계	17,000	21,050	4,050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2,650	△350
시중은행협력자금	14,000	18,400	4,400

1) 제292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462억원을 추가 전출하였음

○ 한편 투자계정의 2020년 운용 규모는 563억 2백만원임.

- 투자계정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6개 분야의 혁신성장펀드²⁾에 출자해 서울 소재 유망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56,302	합 계	56,302
예치금회수	21,097	비용자성사업비	52,021
		혁신성장펀드	52,021
		4차산업혁명펀드	9,000
예수금	30,200	스마트시티펀드	9,637
		제2호서울바이오펀드	9,330
		문화콘텐츠펀드	5,300
이자수입	198	창업지원펀드	10,050
		재도전지원펀드	8,325
		위탁사업비	379
기타수입	4,807	기본경비	42
		예치금	3,044
		예수금원리금상환	1,195

2) 혁신성장펀드는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서울바이오,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규모(펀드별 총 조성액의 10~20%)를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금을 합해 조성하고 있으며, 전문 펀드운용사가 펀드를 결성, 8년(투자 4년, 회수 4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기금의 조성 재원 용어 정비 (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3항)

- 현행 조례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용자상환금과 ▷기금 회수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례상의 기금 재원인 “시의 출연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기금운용기준’)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목적 수행하는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의 조성재원 성격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종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출연 경비를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이를 “전입금”으로 변경해 기금운용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2012년	2020년
<p>① 출연금</p> <p>○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24) 및 기초단체의 광역단체에의 사업비 부담금(227-01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계상</p>	<p>① 전입금</p> <p>○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222-01) 등 계상</p>

- 현행 기금운용기준의 기금 수입항목은 ▷ 전입금, ▷ 보조금, ▷ 차입금, ▷ 용자금회수(이자포함), ▷ 예탁금원금회수, ▷ 예치금회수, ▷ 예수금, ▷ 이자수입, ▷ 기타수입 등 9개 과목임[참고자료].
- 다만 개정안에서는 “시의 기금전출금”으로 변경 제안하였으나, 일반·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서는 “전출금”으로 표기하고, 받는 기금에서는 이를 “전입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기금운용기준에 적합함.
- 따라서 개정안의 “기금전출금”은 “전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다른 수입항목 또한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u>기금전출금</u> 2. <u>용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3. <u>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용자상환금</u>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된 <u>기금의 회수금</u>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시의 기금전출금</u> 2. <u>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 3. <u>그 밖에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u>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시로부터의 전입금</u> 2. <u>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u> 3. <u>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u>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u>용자금 회수</u>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시로부터의 전입금</u> 2. <u>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u> 3. <u>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u>

개 정 안	수 정 의 견
4.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u>투자된 기금의 회수금</u> ③ (생략)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 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용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용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용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용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용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용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용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용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용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용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용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용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 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